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11. 28.

기획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종길 의원 외 4명(손범구, 이진환, 정순옥, 임미연)
- 발의일자: 2025. 11. 1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11. 1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11. 28.)

## 2. 재정이유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조성(안 제2조 ~ 안 제3조)
- 기후대응기금의 용도(안 제4조)
- 기후대응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5조)
- 기후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(안 제6조)
-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(안 제7조)
- 기후대응기금의 존속기한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

### ○ 비용추계서: 비대상

### ○ 입법예고(2025. 11. 14. ~ 11. 26.) 결과: 의견 없음.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, 그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○ 주요내용으로

-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기금의 재원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,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, 징수교부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,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사업,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7조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,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4항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음.

-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기금 설치를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·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한정적 재원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## 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**

## 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